

청주지방법원 2023. 6. 20 선고 2022가단5076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

담당변호사 신인순

피 고 1. A

2. B

3. C

변 론 종 결 2023. 5. 23.

판 결 선 고 2023. 6. 20.

주 문

1. 피고 A, D는 원고에게 각 2,773,902원 및 위 돈 중 2,682,291원에 대하여 2021. 10. 14.부터 2022. 9. 6.까지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 C와 망 E 사이에 2021. 4. 7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C은 망 E에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2021. 4. 8. 접수 제34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피고 A, B에 대한 채권

1) 망 E와 2018. 3. 16. 체결된 신용보증약정(이하 ‘이 사건 신용보증약정’이라 한다)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보증금액 34,000,000원, 보증기한 2023. 3. 14.로 된 보증서를 발급하였다. 망 E는 위 보증서를 F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다.

2) 망 E가 2021. 5. 21. 이자 지급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일으키자, 원고는 2021. 10. 14. 망 E를 대위하여 F은행에 5,420,253원을 변제하였다. 한편, 위 보증사고에 대한 원고의 ‘사고/구상권(특수채권)원장’의 사고발생원인란에 ‘본업의 사업실패’라고 기재되어 있다.

3)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55,670원을 회수하였고, 망 E에 대한 구상금채권(이하 ‘이 사건 구상금채권’이라 한다)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으로 183,221원을 지출하였다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대위변제일인 2021. 10. 14.부터 지연손해금률은 연 10%이다.

4) 망 E가 2021. 4. 23. 사망하여 피고 A, B가 망 E의 재산을 1/2 지분씩 상속하였다.

나. 망 E의 처분행위

망 E는 2021. 4. 7. 피고 C와 사이에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라 한다) 중 1/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 C에게 주문 제2의 나.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다. 망 E의 무자력

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망 E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1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피고 A,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 : 위 피고들이 상속한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망 E의 구상금채무 나. 적용법조 :
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3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,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,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(2021. 4. 7.)은 망 E의 보증사고 발생일(2021. 5. 21.)로부터 불과 1개월 보름 전으로서 당시 이미 망 E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,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1. 10. 14.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,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- 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망 E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, 망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며,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.
- 2)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,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,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 C은 망 E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이승훈